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

(1997. 4)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行政事務 調査結果 報告書

1. 調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調査期間

1997. 2. 18. ~ 4. 17. [60일간]

3. 調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마포구 보건소

4. 調査實施 經過

가. 調査班의 編成

구 분	조 사 위 원	대상기관	조사장소	사무직원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 원 회	[위원장] 이 진 표 [간 사] 채 재 선 [위 원] 김세창, 김승금, 이인구, 한대운, 홍성환	마포구청, 마포구 보건소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실	전문위원 김건재 담 당 박춘배

5.調査日程

일자	조사대상부서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고
'97. 2. 18 ~ 2. 21	마포구청(건축과) 마포구(보건소)	특별위원회실	○조사계획서 수립,채택(위원회)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조사계획서 통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채택 이송	
'97. 2. 21	마포구청(건축과) 마포구(보건소)	특별위원회실	○위원장 간사 선임 ○조사자료검토,문제점 파악, 정보수집 활동	1차특위
'97. 2. 27	마포구청(건축과) 마포구(보건소)	특별위원회실	○현장방문 현황파악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증인선서 ○신축공사 추진현황 청취	2차특위
'97. 3. 4	마포구청(건축과) 마포구(보건소)	특별위원회실	○조사의 건 상정 ○신축공사에 관한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활동 ○조사자료 검토	3차특위
'97. 3. 11	마포구청(건축과) 마포구(보건소)	특별위원회실	○조사관계자료 정밀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 ○신축공사 현장 정밀조사활동	4차특위
'97. 4. 14	마포구청(건축과) 마포구(보건소)	특별위원회실	○신축공사에 대한 개별 질의 ○조사결과 수합	5차특위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

○ 시정운영 3개년 계획 및 구청장 방침('96.7.16)에 따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아현초등학교 앞 마포구청 별관(보건소 분소)신축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철 5호선 환풍구옆 지하1층 건축물로서 진료실 주사실등 61평을 확보하고 있었음(지하2층 262평은 문화공간)
그러나, 보건소 분소의 특성상 외래환자중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출입이 빈번한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출입구의 협소 및 경사(지하45계단)등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분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당초 계획안 수립시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등 면밀한 심사분석없이 사업추진된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향후 노약자. 장애인 편의 시설 보완 및 분소 운영계획 개선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할 것.

○ 마포 보건소 분소 설치 계획서('96년 7월 16일)에 의하면, 1차 보건진료 사업과 예방관리 사업등 분소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은 의사(1명), 간호사(3명), 약사(1명), 방사선사(1명), 임상병리사(1명), 행정요원(3명) 및 운전원(1명)으로 총 11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97년 7월 이후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97년도 우리구 예산에 반영된 일용직 6명 외에는 의사등 필수요원들의 충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보건소의 현 인력('97년 4월 15일 현재)에 있어서도 정원 76명 중 현원 69명으로 간호직과 보건직등에서 7명이 부족하여

불소개소에 따른 인력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우선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동 별관 신축공사 건축 시방서(일반사항1-9)에 의하면, 시공후에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치수.강도.품질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사 기록 사진은 착공전부터 준공시 까지 시공 전과정을 공정 단계별로 촬영하고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현장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 관련 자료의 확인결과, 공정 단계별 사진촬영등 관련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관리가 매우 부실하였음.
본 자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검사시,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서류인바,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 할것.

○ 동 별관 신축공사의 설계서등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부분이 설계도면(A31~A33)상에는 있으나, 내역서(건축)의 원가계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동 별관공사의 총공사비에 정화조 설치 비용이 누락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정화조 설치 비용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95년 7월 제1회 추경 당시 동교어린이집 신축공사에서도 정화조설치 비용이 계약금액에서 누락되어 추가 반영한 사례가 있는바,

설계서등 관련자료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됨.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함)하고, 계약 상대자와 가격 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별관 공사의 설계 용역을 계약상대자인 한보건설(주) 측에 의뢰(제3자인 한원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여 실시한 후 수의계약으로 한보건설(주)과 공사 도급 계약을 한 행위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감독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동 건물의 시공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설비 및 전기 분야에 있어 공종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감독 업무 수행이 매우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감독 조서 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음.
향후 감독 조서의 작성은 물론, 공사용 자재 검수와 각 공종별 시공의 철저한 검사와 관리 감독을 통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한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계약금액 중 설계 용역비의 금액이 내역서상 31;000,000원 임에도 37,000,000원으로 잘못 기재 하였고,

총 공사비와 평당 공사비 그리고 건축공사 공종별 공사비 내역등 일반 현황의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제출 자료 작성에 있어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하여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동 별관 신축공사의 준공기한이 '97년 4월 30일로 되어 있으나,전기공사의 미발주로 공사가 일시중단('97.2.26~'97.2.27)되는등의 사유로 사실상 '97년 6월 20일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공기 연장은 공사비중 간접비등의 증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될 수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공사 예정 공정체계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바람.

○ 동 별관 신축공사의 추진과정을 보면 '96년 10월 20일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공사 시방서.설계도면등 설계서를 작성한 다음 동년 12월30일 수의계약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튿날인 31일 한보건설(주)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을 하였으나, 전기 공사는 당해 연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발주를 하지 못하여 전체 공정에 많은 차질이 있었음.
그러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교부금 7억원이 '96년6월10일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됨에 따라 당시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의 수립과 부서간 협조 체제가 원활하였다면 동 별관공사는 예정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예산을 적기 집행하여 동절기 공사 및 사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동 별관 공사의 시공은 사업의 성격상 건축(설비)과 전기공사의 분리 발주로 동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96년 12월31일 건축(설비)도급 계약을 체결한 한보건설(주)측에서는 계약외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병행하여 시공한 바 있음.
그러나 '97년2월27일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평화전력공사가 낙찰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전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 문제등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전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전기 시설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등 위험성을 상시 내포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방송.통신 및 지중 매설물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공시 어느 공종보다도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시공이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전기 시방서(일반사항1-3)에 따라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진촬영, 기록용으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동 자료의 확인 결과, 작성 및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였고 형식적이였음.
향후 현장 반입 자재의 엄격한 검수 및 철저한 공정관리 그리고 사진 촬영등 관련자료의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동 별관 신축공사 내역서(건축)를 보면, 가설 공사비중 조립식 가설사무소(3개월)의 면적이 120M^2 로 과다하게 책정 되었는

바, 동 면적을" '97건설공사 표준품셈" 가설부분 적용기준인 시설물 규모에 의한 구분에 따라 56㎡(감독사무소 12㎡, 도급자재사무소24㎡, 기타자재창고20㎡)로 축소조정토록 검토할것.

○ 동 내역서(기계) 장비 설치공사중 지하 저수조(규격4,000, 3,500, 2,000H)의 재질을 STS가격(13,800,000원)으로 산출하였는바,
이를 건물 시공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내식성과 단열성 등에 큰 차이가 없는 F.R.P재질로 교체토록 검토하고, 기타 건축,설비,전기분야의 설계서 및 내역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문제점을 적출 시정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建 議 事 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당해 공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반입 자재의 신품여부와 공업 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품 사용 여부의 확인 및 주요 공종별 입회. 검사 등에 있어 시공 현장에 상주 감독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 개의 공사 현장을 담당하고, 건축 민원 해결등 산적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집행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공무원의 감독 체제 개선 및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 할것.

處理 意見

○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7. 5. 31까지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